

고 발 장

수신 : 성북경찰서장

참조 : 수사과장

제목 : 성북구 휘장 무단사용 단체 고발 조치

1. 성북구 휘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법과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단체를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체명 : (가칭)정릉3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나. 위반단체 및 소속된 위반자

위반사항	위반자	소속
성북구 상징물 무단사용	박명헌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재용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차경진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
	이용규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총무

다. 위반내용

- 성북구 휘장  무단사용

라. 위반법규 :

- 상표법 제50조 및 상표법 제66조(상표권 침해), 형법 제225조 공도화위죄
-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제한) 위반

마. 벌칙조항 :

- 상표법 제93조 , 형법 제225조

2. 위 사항을 고발하오며 본 업무를 성북구청 홍보전산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김나연에게 위임합니다.

2015. 7. .

성 북 구 청 장

붙 임 : 서면경고장(내용증명) 및 위반사진 8부 끝.

공무원 진술조서

소속 : 성북구청 홍보전산과(☎ 02-2241-2104)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김나연(*****2*****)

상기 본인은 2014년 10월부터 성북구청 홍보전산과에서 구 상징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상표법을 위반한 아래 (가칭)정릉3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소속 개인 고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1. 정릉3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동 위원회에 소속된 자들은 정릉3지구 재개발 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단체로서 성북구청 휘장 사용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구의 휘장을 위원회 소속 개인명함, 대봉투, 홍보용 광티슈, 쇼핑백 등의 물품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 단체의 활동이 마치 성북구청이 진행하는 사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성북구청의 권위를 이용하여 보다 사업을 쉽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수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위 단체와 소속 개인들의 성북구 휘장 무단사용에 대하여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여러 차례 구두로 사용제한을 경고하고 사용중단 및 이미 사용된 물품 등에 대해 폐기 조치할 것을 공문(2015.7.27.)으로 전달하였으나, 현재(2015.8.5.)까지도 성북구 휘장이 삽입된 대봉투, 개인명함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시정되지 않고 있어 상표법 제66조(상표권침해), 형법 제225조(공도화위조죄)를 위반한 사항을 귀 서에 고발합니다.

(※ 성북구 휘장은 2009년 7월27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업무표장)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상표권에 관한 법률인 상표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다 음 -

가. 위반단체위치 : 서울시 성북구 보문국로20길 18 대선빌딩 2층(정릉동)

나. 단체 소속 개인 인적사항

위반사항	위반자	소속
성북구 휘장 무단사용	박명현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재용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차경진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사
	이용규	가칭 정릉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총무

다. 위반내용

○ 성북구 휘장  성북 무단사용

라. 위반법규 : 상표법 제50조, 상표법 제66조

형법 제225조 공도화 위조죄

마. 벌칙조항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225조

3. 위 진술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진술합니다. 끝.

2015년 8월 일
위 진술인 김나연 (인)